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95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박수영 · 유상범 · 박충권
김재섭 · 강승규 · 박수민
서명옥 · 백종현 · 정성국
박성훈 · 권영세 · 박대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퇴직공직자의”를 “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의”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 및 기본적 신원사항”으로 한다.

제2장의3(제14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제14조의18(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산을 등록할 때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의 변동사항을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

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할 때 기본적 신원사항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18제2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호까지에”를 “제5호까지, 제5호의2에”로 한다.

5의2.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18제2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 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 식백지신탁, <u>퇴직공직자의</u> 취업 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 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 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기본적 신원사항의</u> <u>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의</u> --- ----- ----- ----- ----- ----- -----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 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 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 ----- ----- ----- ----- ----- ----- -----.
1. <u>재산등록사항</u> 의 심사와 그	1. <u>재산등록사항 및 기본적 신</u>

결과의 처리

2. ~ 4.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원사항-----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장의3 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제14조의18(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산을 등록할 때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의 변동사항을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할 때 기본적 신원사항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18. (생략)

<신설>

19. ~ 21.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④ 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징계 등) -----

-----.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18제2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 22. (현행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

6. ~ 11.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u>제5호까지</u>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u>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18 제2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u> 6. ~ 11. (현행과 같음) ④ ----- -----<u>제5호까지, 제5호의 2에</u>----- ----- ----- ----- ----- -----. ⑤ (현행과 같음)
---	---